

# 서울특별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1518
----------	---------

제안년월일 : 2024년 04월 24일

제안자 : 기획경제위원장

## 1. 수정이유

- 영업시간 제한에서 온라인을 전면 제외하는 것은 「유통산업발전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온라인 배송 영업을 오프라인 영업제한시간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도록 규정함.

## 2. 수정의 주요 내용

- 오프라인 영업제한시간과 겹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온라인 배송이 가능하도록 수정함(안 제12조제1항제1호).

# 서울특별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 제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통신판매업을 신고한 대형  
마트와 준대규모점포의 경우 오프라인 영업제한시간과 겹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온라인배송 가능)

##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제12조(영업시간 등의 제한) ① 시장은 법에서 정하는 대형유통기업 등에 대하여 구청장이 법 제12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때 <u>시 전체가 동일하도록</u> 구청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p> <p>1.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u>영업시간 제한</u></p> <p>2. 월 2회의 의무휴업일. 이 경우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제12조(영업시간 등의 제한) ① 시장은 법에서 정하는 대형유통기업 등에 대하여 구청장이 법 제12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때 <u>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전체가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u> 구청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p> <p>1. ----- <u>영업시간 제한(온라인 배송 제외)</u></p> <p>2. 월 2회의 의무휴업일(<u>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지정함</u>)</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2조(영업시간 등의 제한) ① (개정안과 같음)</p> <p>1. ----- <u>범위에서 영업시간 제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통신판매업을 신고한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의 경우 오프라인 영업 제한시간과 겹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온라인배송 가능)</u></p> <p>2. (개정안과 같음)</p> <p>② (개정안과 같음)</p>

## 서울특별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 전체가 동일하도록”을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전체가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 제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통신판매업을 신고한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의 경우 오프라인 영업제한시간과 겹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온라인배송 가능)
2. 월 2회의 의무휴업일(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지정함)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2조(영업시간 등의 제한) ① 시장은 법에서 정하는 대형유통기업 등에 대하여 구청장이 법 제 12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때 <u>시 전체가 동일하도록</u> 구청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p> <p>1.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u>영업시간 제한</u></p> <p>2. 월 2회의 의무휴업일. 이 경우 의무휴업일은 <u>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u></p> <p>② (생략)</p>	<p>제12조(영업시간 등의 제한) ① 시장은 법에서 정하는 대형유통기업 등에 대하여 구청장이 법 제 12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때 <u>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전체가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u> 구청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p> <p>1. ----- <u>범위에서 영업시간 제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통신판매업을 신고한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의 경우 오프라인 영업제한시간과 겹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온라인배송 가능)</u></p> <p>2. 월 2회의 의무휴업일(<u>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지정함</u>)</p> <p>② (현행과 같음)</p>